

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(안)

공원·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변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3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국토종합계획(2011~2020) 및 경상북도 종합계획(2012~2020)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와 구미시 인구증가, 제5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8조,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12일 실시한 「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 변경(안)」의 공청회 내용 중 공원·녹지계획이 일부 조정되어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

2.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(안) 공원·녹지계획 조정 내용

□ 공원·녹지계획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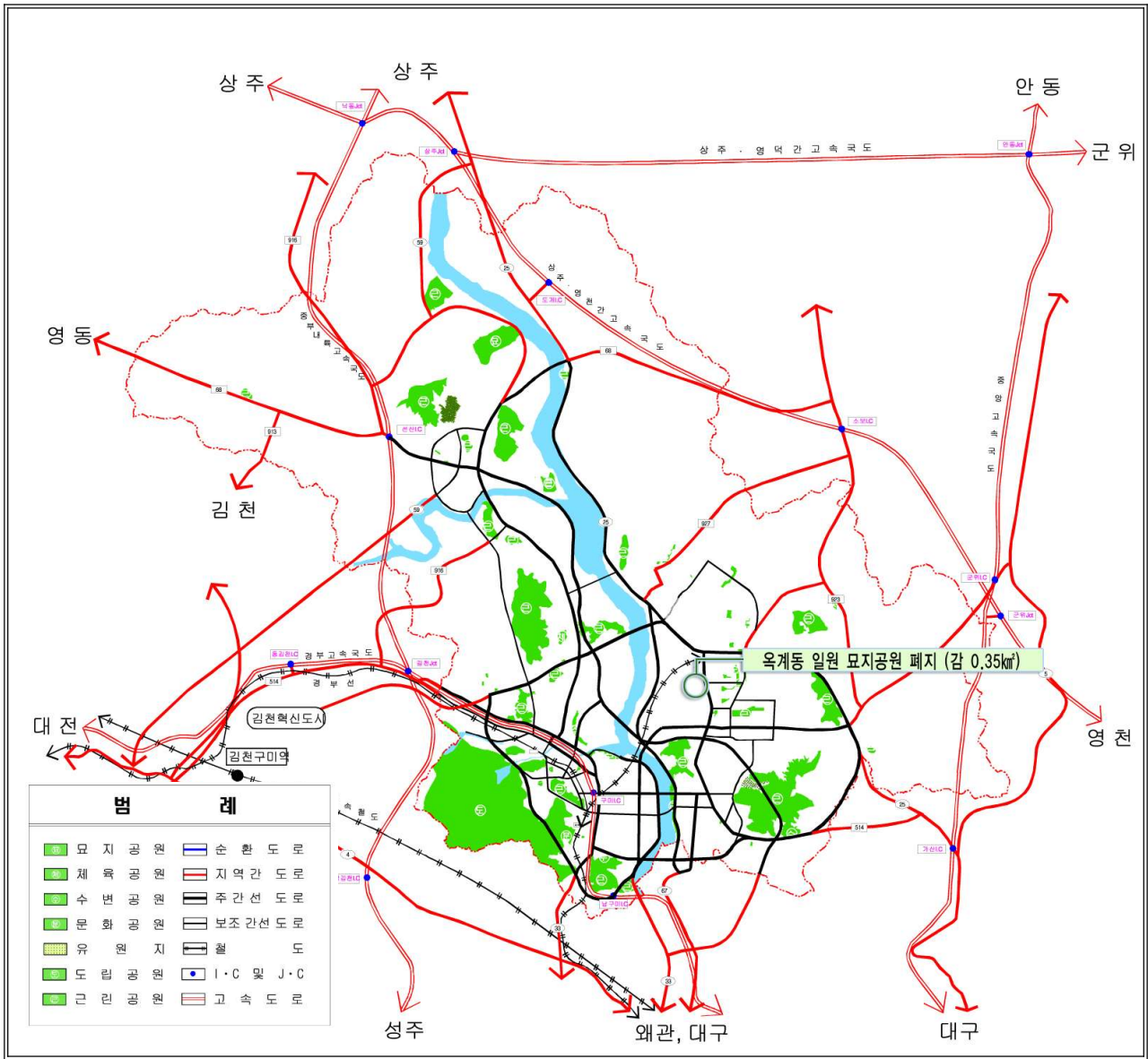
○ 옥계묘지공원 1개소 폐지

- 위 치 : 구미시 옥계동 산7 일원
- 면 적 : 0.350km²
- 2012년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(보건복지부)의 기본방향(신규설치 및 확장은 제한)에 따라 공설묘지 확장계획이 없으며,
- 2011년 구미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장 신설이 예정으로 현 옥계묘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됨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대상(10만m² 이상 공원)인 옥계묘지공원 조정

<공원·녹지계획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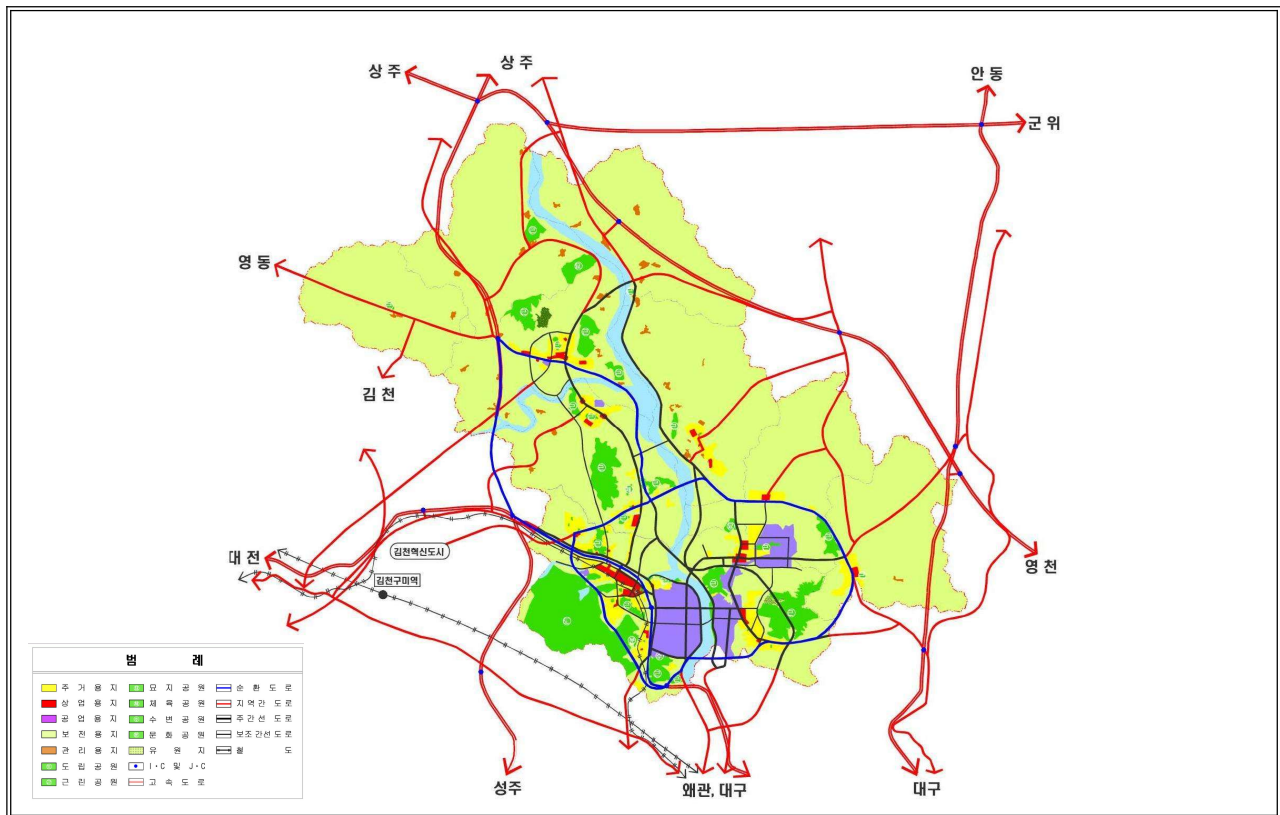
구 분	2020년(기정)		2020년(변경) 당초 계획		2020년(변경) 일부 조정	
	개소	면적(km ²)	개소	면적(km ²)	개소	면적(km ²)
1인당 공원면적	48.49m ² /인		51.33m ² /인		50.75m²/인	
공원 합계	42	28.866	71	30.800	70	30.450
근린공원	39	26.67	57	27.703	57	27.703
체육공원	1	0.166	3	0.269	3	0.269
수변공원	—	—	8	0.533	8	0.533
문화공원	—	—	1	0.245	1	0.245
묘지공원	2	2.05	2	2.05	1	1.70

<공원·녹지 계획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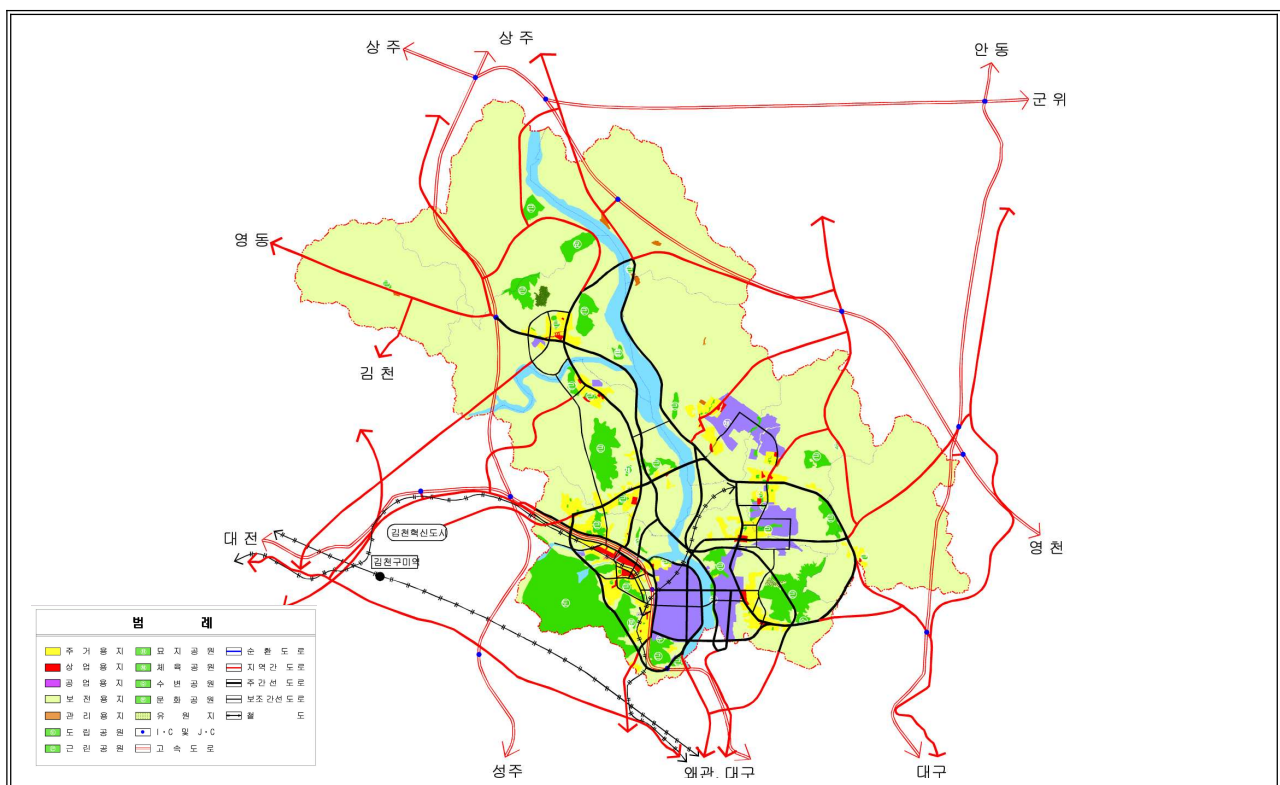


□ 도시기본계획 구상도

<도시기본계획 구상도(기정)>



<도시기본계획 구상도(변경)>



《참 고 사 항》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법 제21조 (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

2-2-2. 시장·군수는 5년마다 도시·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,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·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3-3-5. 도시·군기본계획의 정비

- (1) 도시·군기본계획은 공동체의 합의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도시·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·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.
- (3) 재수립시에는 기존 도시·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.

6-3-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인구지표 및 이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당해 시·군의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의견을 포함하되, 입안된 도시·군기본계획(안)의 내용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